COMMUNITY PROPERTY vs. SEPARATE PROPERTY

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추측하건데, 아마 한국에서는 남편이 민사소송에 져서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을 부인에게로 넘겨주면 어느정도는 채권자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보호할수 있는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비록재판에서는 졌을망정, 자기는재산이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재판에서 이긴채권자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종종 보게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다보면, 집도있고 사업체도 있는데, 재판중에 부인에게 모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듣게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그러한가 보다 하고 추측을 하게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재산도 내것, 부인 재산도 내것, 공동재산도 내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이유는 COMMUNITY PROPERTY 라는 개념에 의해 부부의 재산은 공동소유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재판에서 이긴 채권자는 JUDGMENT 라는 판결문을가지고 부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한데, 바로 SEPARATE PROPERTY 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만일 부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부인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서 GIFT, 즉 증여로 받았다거나, 혹은 부인의 부모나 아는 사람에게 유산상속을 받았다거나 하면, 그런 재산은 SEPARATE PROPERTY 라고하여, 남편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COMMUNITY PROPERTY 인지 SEPARATE PROPERTY 인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처가쪽에서 아직도 MORTGAGE가 남은 집을 부인에게 증여로 주었다고 가정을 하지요, 받은 후에 부인이 월급으로 받은 돈으로 MORTGAGE를 계속 내었을때, 일이 복잡해 집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벌었던 부인이 벌었던, 일해서 번돈은 COMMUNITY PROPERTY로 간주가 되므로, 처가에서 증여로 받은 집이라도, 부인이 일해서 번 돈으로 MORTGAGE를 낸 부분만큼은 COMMUNITY PROPERTY가 되기 때문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빼앗아 갈 수가 있게됩니다. 법원에서는 어느부분이 COMMUNITY PROPERTY고 어느 부분이 SEPARATE PROPERTY인지 가려내기 위하여 회계사까지 고용해야 하므로 소송 비용이 양쪽 다, 많이 들게됩니다.